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1
----------	-----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행규칙) (생략)	<p><신설> 제9조(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시행규칙) (현행 제9조와 같음)</p>